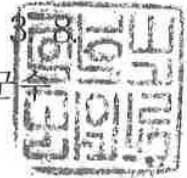
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3. 8.

제출자 : 달성군



## 1. 제안이유

‘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’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을 ‘강행’에서 ‘임의’규정으로 변경(안 제12조)

나.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5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3. 2. 7. ~ 2. 27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구성·운영한다.”를 “구성·운영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행위에 관한 특례)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4조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2조(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)</b> 군수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구성·운영한다.</u></p>	<p><b>제12조(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)</b> ----- ----- ----- -----<u>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
<p><b>제14조(위원회 구성)</b></p> <p>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⑤ <u>군수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⑥ ~ ⑦ (생략)</p>	<p><b>제14조(위원회 구성)</b>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절차의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 <p>⑤ &lt;삭제&gt;</p> <p>⑥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## □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

제5조(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(이하 “고용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
2.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
3.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